

#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(KRIGF) 워크숍 보고서

세션명	인터넷 주소자원 개방정책		
일시	2017.9.15.(금) 15:15~16:45	장소	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5
참석자	사회	강경란(아주대학교)	
	패널	조진현(한국인터넷진흥원)	김경석(부산대학교)
		이영음(한국방송통신대학교)	
		전웅준(법무법인 유미)	
플로어	약 10명 참여		

## 세션 요약

워크숍 취지	<p>한국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(KIGA) 산하의 주소자원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주소 자원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/p> <p>지난 4월부터 주소자원분과위원회 내에서는 기존에 도메인 이름 관련해서 닫혀 있던 정책에서 개방하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/p> <p>주소 자원 특히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므로, 그동안 주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슈들에 대해 한국 IGF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.</p> <p>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자가 혼용된 도메인 이름 허용</li> <li>- 숫자로만 구성된 도메인 이름 허용</li> <li>- 해외 주소지 개방</li> <li>- 예약어/유보어 개방</li> </ul>
--------	--

### <주제1> .kr/한국 도메인 이름 등록자 해외 주소지 허용 (강경란 교수)

-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.kr/.한국 신청자 및 등록자 주소지를 국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개정하여 해외 주소지를 가진 개인 및 기관도 등록을 허용해야 함.
- 정책 도입의 필요성으로 △.kr/.한국 도메인 활성화, △해외법인과 개인 간의 .kr/.한국 도메인 등록 형평성 해결, △도메인 이름 관련 문제 발생 시 등록자 추적 용이(해외 사례 참고)함 등이 제기됨.
-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△허용의 범위, △해외 주소지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방법, △분쟁 발생 시 적용할 규정, △해외 주소지 개방 시 등록대행업체의 추가 개발 비용 대비 영업 이익 등이 있음.
- 해외주소지 개방을 통한 도메인 등록 활성화를 기대하나, 한편으로 도메인 관련 분쟁 등 문제 발생 시 등록자와의 연락 보장 필요 등에 따라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음.

### <주제2> 예약어/유보어 개방 정책 논의(이영음 교수)

-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수요 증진으로 예약어에 대한 개방이 논의됨. 다만,

개방 후에는 예약어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

- 예약어로 확보해야 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개방 범위 설정
  - 성씨 영문 표기에 대해, 한글 영문 표기 변경에 따라 무효한 표기 (총 397개 중 259개 삭제)
  - 한글 .kr의 유보어인 보통명사에 대해,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수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부터 개방

**<주제3> .kr/한국 아래 한자혼용 도메인 이름의 허용에 관한 논의(전웅준 변호사)**

배경	찬성론	반대론
-TLD에서 한자 사용 이슈와 구별 -IDN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자 TLD생성 논의와 맞물려 국내 ccTLD에서 2단계 한자도메인 이름 허용 관련 정책 필요성	-이용자 선택권 보장 (도메인의 공공성) -향후 한자 도메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	-2단계 한자 도메인에 대한 수요 부족 -Registrar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-정부시책인 한글전용정책과 배치(국어기본법)

**<주제4>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(김경석 교수)**

2017년 3월 3일에 나온 K-LGR v 0.7은 11,172개의 한글 음절, 4,758의 한자, 152개의 변형 그룹을 포함하고 있음.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K-LGR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1)한국에서 한자 도메인이 필요한지 2)한글-한자 도메인이 필요한지 3)한자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지로 구분됨.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함.

**세부 내용**

**1. [강경란 교수] .kr/한국 도메인 이름 등록자 해외 주소지 허용**

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.kr/.한국 신청자 및 등록자 주소지를 국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개정하여 해외 주소지를 가진 개인 및 기관도 등록을 허용해야 함

**1) 정책 도입의 필요성 1**

**(1) .kr/한국 도메인 활성화**

- .kr/.한국의 최근 등록 추이를 보면 신규 등록 및 총 등록 수 감소 추세
-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주소 개인 및 기관의 등록을 양성화
- 주소지 제한 정책을 폐지하여 .kr 및 .한국 도메인 등록 활성화

**2) 정책 도입의 필요성 2**

**(1) 해외법인과 개인 간의 .kr/한국 도메인 등록 형평성 해결**

- 개인은 국내 주소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, 그러나 법인은 국내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 .kr/.한국에 도메인 등록이 어려움

**(2) 도메인 이름 관련 문제 발생 시 등록자 추적 용이(해외 사례 참고)**

- 일본: “Non-Japanese corporations registered in Japan as “Gaikoku Kaisha (Foreign Company)” may also apply for a CO.JP domain name.”
- 미국: “A foreign entity or organization that has a bona fide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any of its possessions or territories. Applicant must also.....”

-영국: "Where a registrant address is not within the United Kingdom, a UK address for service must also be supplied"

### 3)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1

#### (1) 허용의 범위

- 의견①: 임의의 일반인이 .kr/.한국 하에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
- 의견②: 한국에서 비즈니스 등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허용

#### (2) 해외 주소지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방법

- 의견①: 등록 주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(예를 들어 호텔) 주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
- 의견②: 주소지 정확성 보장을 위해 해당된 국가에서 공증된 주소만을 허용함 (공증서류 제출 의무)
- 의견③: 연락처를 우편 주소에서 email로 변경하여 가입 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연락의 신속성을 보장함
- 의견④: 등록된 주소가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경우, "도메인이름관리준칙" 제11조(등록주소)에 의거하여 도메인 등록 취소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, 등록자가 유의하여 등록할 것임

### 4)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2

#### (1)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규정

- 의견①: 「도메인이름관리준칙」, 「도메인이름관리세칙」 등 국내 도메인 이름 관련 정책이 집행되는 것으로 등록 시에 명시하여 등록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

#### (2) 해외 주소지 개방 시 등록대행업체의 추가 개발 비용 대비 영업 이익

- 의견①: 해외 주소 입력을 위한 화면 추가 개발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, 이로 인한 도메인 등록 건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낮음
- 의견②: 한류 확산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
### 5) 결론

- 해외주소지 개방을 통한 도메인 등록 활성화를 기대함
- 도메인 관련 분쟁 등 문제 발생 시 등록자와의 연락 보장 필요 등에 따라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음

## 2. [이영음 교수] 예약어/유보어 개방 정책 논의

### 1) 예약어 개요

#### (1) 예약어 정의

- ① 공공의 이익 또는 특수한 목적으로 KISA에서 사전에 목록을 정한 단어로서 등록이 제한된 단어
- ② 도메인 주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필수 단어

#### (2) 논점: 도메인 영역 보호 vs 개방

### 2) 예약어 논의 역사

#### (1) 어느 단계에서의 유보어인가?

- ① co.kr, ac.kr, pe.kr 등의 3단계
- ② 영문, 한글 2단계 (.kr/.한국)

## (2) 유보어 선정 원칙

-설정 시기, 환경에 따라 개방성과 중요 요인이 달라짐

## (3)예약어 논의 역사

설정시기	예약어 적용대상	예약어 원칙	비고
1998	co.kr, ac.kr, pe.kr (영문3단계)	-비속어의 영어 표현(2) -숫자 한 글자 -영어 알파벳 한 글자 -도메인 관리(2) -pe.kr의 경우 성씨의 영문표기(405)	
2003	한글.kr (한글2단계)	-한글자 단어 전체 -비속어 (43) -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글자 조합(4) -보통명사 (656)	보통명사의 포함 으로 지나친 규 제 논란
2006	.kr (영문2단계)	-영문 두 글자 이하로 구성된 문자열 -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열 -비속어의 영어 표현 (17) -기존의 2단계 공공 도메인(17) -기타 도메인 관리(39) -지역명 (195)	지역명은 신규 최상위 도메인에 서도 유지 주장 강함
2011	.한국 (영문, 한글 2단계)	-반사회적 단어(97) -국가명, 지역명(460) -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이름(12)	한글 2단계와는 달리 보통명사를 제함으로써 개방 정책

## 3) 예약어 관련 현재의 논의

### (1) 개방 목적

- ①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수요 증진
- ②다만, 개방 후에는 예약어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

### (2) 개방 범위

-예약어로 확보해야 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개방

- ①성씨 영문 표기에 대해, 한글 영문 표기 변경에 따라 무효한 표기 (총 397개 중 259개 삭제)
- ②한글 .kr의 유보어인 보통명사에 대해,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수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부터 개방

### (3) 추후 활동 계획

- ①개방 범위 별 개방에 대한 타당한 찬반 근거 토론
- ②KrIGF 참석자 대상 의견 수렴 온오프라인 설문지 구축, 세션 참가자 대상 오프라인 설문 실시 및 온라인 설문 사이트 홍보
- ③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및 새로운 관점 발견

## 3. [전웅준 변호사] .kr/.한국 아래 한자 혼용 도메인 이름의 허용에 관한 논의

### 1) 논의의 시작

#### (1) TLD에서 한자 사용 이슈와 구별

- ①IDN(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) 차원에서 추진하는, 한자로 된 TLD(Top Level Domain)를 생성하는 국제적 이슈와 구별
- ②.kr/.한국 아래에 한자 단독 또는 한자를 혼용하는 2단계/3단계 도메인 이름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

(ex. 美術館.kr(o), 증권.會社(x))

③.kr/.한국 ccTLD는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국내 registry에 의해 관리되므로, 사안 자체는 국내적 문제

## (2) 필요성의 제기

①숫자, 해외 주소지에 대한 국내 도메인이름 등록 허용 이슈와 같은 맥락

②IDN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자 TLD생성 논의와 맞물려서 국내 ccTLD에서 2단계 한자 도메인 이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 대두

③국내 Registrar 등의 도메인 산업적 이해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

## 2) 찬반론

### (1) 찬성

①이용자 선택권 보장 (도메인의 공공성)

-우리 사회에서 한자가 사용되고 이므로 이를 도메인이름에 반영(한자 상표, 상호)

-표현의 자유, 도메인에 대한 접근성

②한자 도메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

-ICANN의 LGR(Label Generation Rule)작업에서 한국이 한자 관련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책논의에서 배제된다는 점, 향후 한자 TLD등록시 중국, 일본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문제-이체자, 한국식 한자가 존재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글자가 발생할 수 있음

-향후 한자 관련 도메인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권 보장

### (2) 반대

①2단계 한자 도메인에 대한 수요 부족

②Registrar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

-등록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 전부가 한자(한글혼용) 도메인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

-등록대행자마다 시스템 구축 현황이 상이하므로, 한자 도메인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300만원~1억 원까지 다양하게 예측됨

-다만,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개월정도의 M/M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

③정부시책인 한글전용정책과 배치(국어기본법)

-도메인 영역은 국어기본법의 대상이 아님

-이 문제는 정부가 국내 도메인 정책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임

## 3) 검토

### (1) 검토의 관점

①이용자의 수요, 사업자의 비용, 정책적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
②이용자의 수요, 사업자의 비용의 관점

-현재 이용자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, 향후 한자 사용 실태를 단정하기 어려움

-사업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나,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면이 있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임

-한글도메인, PE 도메인의 사례를 보면, 도메인 정책은 시장의 수요, 비용의 측면보다는 도메인 선택의 기회 제공, 공공성 확보의 관점이 더 크다고 생각됨

### (2) 정책적 함의

- ①도메인 영역에서 이용자에게 한자 사용 기회를 제공 (상업적 표현의 자유, 도메인 접근성 확대)
- ②한자 도메인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권 보장
- ③사업자 비용부담을 고려할 것

#### 4. [김경석 교수]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

##### 1) 소개

- “Kore”(Korean Label)에 포함되는 글자들: 한글과 한자 모두 K-LGR에 포함됨
- K-LGR v 0.7 (2017.03.03.): 11172개의 한글 음절, 4758개의 한자, 152개의 변형그룹
- 2017년 1월, 한국인터넷주소위원회 거버넌스 연합은 .kr/.한국 주소 2단계에서 한자 사용을 허락하기 위해 WG를 만들.

##### 2) 한국어와 중국어 변형그룹에 대한 리뷰

- KGP와 CGP는 K-LGR과 C-LGR의 변형그룹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했음
- 3개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도출됨
- 시나리오①중국어 변형 그룹은 수정사항 없이 유지된다.
- [K:indep(C1), indep(C2)]; [C: vg (C1,C2)]->[K&C: vg (C1,C2)]
- 시나리오②중국어 변형 그룹이 완전히 나누어진다.
- [K: indep(C1), indep(C2)]; [C: vg(C1, C2)]->[K&C :indep (C1), indep (C2)]
- [K: indep(C1), indep(C2), indep(C3)]; [C: vg (C1, C2, C3)]-> [K&C: indep(C1), indep(C2), indep(C3)];
- 시나리오③중국어 변형 그룹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진다.
- [K: vg(C4, C5), indep(C6)]; [C: vg (C4, C5, C6)]; -> [K&C: vg (C4,C5), indep (C6)]

##### 3) K-LGR v0.7 (2017.03.03.)

- K-LGR v0.6 (2016.11.28.): 4819개의 한자
- K-LGR v0.7(2017.03.03.): 4758개의 한자
- K-LGR v0.7과 C-LGR 의 변형그룹 사이에 충돌 없음

##### 4) 논의가 필요한 사항

- ①한국에서 한자도메인이 필요한가?
- ②한국에서 한글-한자 도메인이 필요한가?
- ③한국에서 한자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가?

##### 질의

(플로어)

- 한 홈페이지 당, 단 하나의 주소만 등록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 내에서 굳이 한자 도메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.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
(강경란 교수)

- 우리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.

(조진현 센터장)

-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,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.

(플로어)

- 도메인에 한자를 쓰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 우

리는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실제 도메인에 한자를 쓰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. 현재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,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, 권리를 포기할 정도의 결단이 있느냐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채 단순히 한자 쓰는 권리를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.

(김경석 교수)

- 국내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를 잠깐 살펴본다면, 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ICANN에서 먼저 우리에게 요청했었던 사항이다. 현재는 또 정반대로 한자 도메인 논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ICANN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

(조진현 센터장)

- K-LGR에 한자와 한글 모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왜 애초에 2단계 도메인에서 한자 표기를 허용하지 못했었느냐의 문제는 당시 정책 시행을 위해 2개월 밖에 없는 시간 안에 한자 표기까지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고 일단 한글 표기만 가능하게 했었다.

(플로어)

- 우리나라의 예약어에는 보통명사가 빠져있는데 외국과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. 보통명사를 허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예약어로 묶어두어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가?

(강경란 교수)

- 그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, 예약어를 설정했던 각각의 원인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후에 풀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.

(플로어)

- 보통명사를 허용하게 해주면 도메인 신청이 폭주해 Registrar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

(김경식 교수)

-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는 각각의 회사의 재정적 범위 내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.